

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[2017. 5. 12] 조례 제748호

일부개정 2019. 2. 22 조례 제852호

일부개정 2021. 12. 17 조례 제99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증평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17>

제2조 삭제 <2021. 12. 17>

제3조(군수의 책무)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17>

제4조(추진계획 수립)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
2.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
3.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군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·지원을 위하여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)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·지원하기 위하여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9. 2. 22>

제6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 <개정 2021. 12. 17>

1.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정책 제안
2.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

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

3. 제4조의 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의견제시

4. 그 밖에 자치분권 정책 추진에 대한 지원 업무

제7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적용한다. <개정 2019. 2. 22, 2021. 12. 17>

② 군수와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, 민간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신설 2019. 2. 22, 개정 2021. 12. 17>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19. 2. 22, 2021. 12. 17>

1. 학계, 언론계, 법조계,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
2. 증평군의회 의원

3. 관계 공무원 등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9. 2. 22, 2021. 12. 17>

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. <개정 2019. 2. 22, 2021. 12. 17>

제8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장시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

2.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9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협의회의 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한다. 다만,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최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

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2. 22>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재정적 지원)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이와 관련된 협의회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9. 2. 22]

제12조(운영 규정) 협의회회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9. 2. 22 조례 제852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1. 12. 17 조례 제999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